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64

발의연월일: 2024. 11. 18.

발 의 자:김선교・구자근・김예지

송석준 · 김상훈 · 김석기

이철규 · 김성원 · 박정훈

최수진 · 서천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고령사회의 진전, 수명연장,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치유자원과 산림에서의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고 있으나, 치유 수요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자연자원 기반의 유사 치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산림치유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간 주도 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함에 따라 산림치유 산업의 육성,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고, 이 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 기반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림의 다양한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의 정의와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등을 정의하고 산림치유를 기반으로 하는 산림치유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산림치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마. 산림치유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산림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 지정 등(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평가, 치유의 숲 등록, 입장료 등의 징수, 치유의 숲 위탁 등(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 아. 산림치유 전문인력인 산림치유사 자격 관련, 양성기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권한 등의 위임·위탁(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차. 벌칙 및 과태료(제41조 및 제42조)

법률 제 호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산림치유"란 심신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 시설 등을 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산림치유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자원의 발굴·활용, 프로그램 개발·제공, 시설 운영 등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 3. "산림치유자원"이란 산림치유에 활용할 수 있는 수목·목재, 향기, 경관, 소리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말한다.
- 4. "산림치유시설"이란 산림치유자원을 갖추어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가. 치유의 숲

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호에 따른 휴양

- 치유숲길
- 다. 그 밖에 산림치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산림치유사"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7. "산림치유산업"이란 산림치유시설을 조성하거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및 그 밖에 산림치유와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치유 서비스와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산림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림치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 ② 산림치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 화하고 산림치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림치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림치유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산림치유에 관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3. 산림치유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4. 산림치유자원의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산림치유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7.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치유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림청장은 사회적·지역적·산림 환경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계획 중 산림치유 관련 내용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

-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
- 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 종합계획
- 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 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수 있다.
-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 년마다 지역산림치유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림

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산림치유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산림치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초조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치유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산림치유시설의 조성, 산림치유산업 등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및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산림치유와 관련된 공공기관(「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 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 활성화, 산림치유 산업 육성 및 산림치유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산림치유 관계 기관, 산림치유시설 운영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림치유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지역협의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산림치유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서 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산림치유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정보체계 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림치유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 등 기본체계
 - 2. 산림치유시설의 조성 · 운영 현황과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 3. 산림치유사 등 관계 전문가의 현황과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정보
- 4.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의 성과
- 5. 산림치유 창업 관련 데이터와 창업 지원 정보
- 6. 그 밖에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0조(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① 산림청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위하여 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 다.
 - ③ 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운영 및 통합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제11조(산림치유산업의 육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산림치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관련 제도 개선
- 2. 산림치유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홍보
- 3. 산림치유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 4. 산림치유업 및 연관기업의 발굴ㆍ육성
- 5. 그 밖에 산림치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산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등) ① 산림 청장은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림치유산업 진흥을 위하여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치유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사업화

- 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내용, 지원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산림치유업의 등록 등) ① 산림치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업의 등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15조(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산림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산림치유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관할구역 내 산림치유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시행
 - 2. 관할구역 내 산림치유 관련 사업 및 관련 산림치유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 3. 관할구역 내 산림치유 관련 정보공유 및 홍보 지원
 - 4. 그 밖에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 ③ 시 · 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6조(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②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치유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산림치유프로그램에는 제5항 에 따른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3항에 따른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치유의 숲 조성 등

- 제18조(치유의 숲 조성)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의 숲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치유의 숲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유하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치유의 숲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치유의 숲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하거나 승인된 치유의 숲조성계획에 포함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본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승인 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성하는 치유의 숲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의 숲조성계획에 따라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산림청장이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

거나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 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

- 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 지를 준용한다.
- 제20조(치유의 숲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2 항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의 승인(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치유의 숲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21조(치유의 숲의 타당성 평가)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

- 를 하여야 한다. 치유의 숲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 2.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 ② 타당성 평가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치유의 숲 등록) ① 치유의 숲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치유의 숲을 운영하려는 자는 치유의 숲의 명칭·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숲 전문인력 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 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등록 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치유의 숲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자는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치유의 숲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4조(치유의 숲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치유의 숲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3. 그 밖에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25조(치유의 숲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 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 산림복지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산림치유사

제26조(산림치유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사의 자격을 부여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등급을 나눌 수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출 것
- 2. 제32조에 따른 산림치유사 양성기관에서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 3. 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산림치유사 등급별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치유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치유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④ 산림치유사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제27조(산림치유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사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 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 의 죄
-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 정한다)의 죄
-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 마.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
- 사. 「노인복지법」 제1조의2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8조(자격증의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산림치유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산림치유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신청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산림치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산림치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29조(산림치유사의 업무) 산림치유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보급하고 지도하는 업무
 - 2. 그 밖에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30조(산림치유사의 배치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산림치유시설에 산림치유사를 배치하는 경우 산림치유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1조(사회서비스 등과 연계 제공)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등과 연계 하여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산림치유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2조(산림치유사 양성기관)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 또는 단체를 산 림치유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게 운영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자료 요구 또는 현장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산림치유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산림치유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① 산림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5.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산림치유사의 보수교육) ① 제29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산 림치유사는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내용·비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치유사나 산림치유사 양성기관이 아닌 자는 산림치유사, 산림치유사 양성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②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치유의 숲이 아니면 치유의 숲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36조(재정지원)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법에 따른 산림치유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 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이 법에 따른 산림치유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1.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치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 발급 받으려는 사람
- 제3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0조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 2. 제32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3. 제33조에 따라 산림치유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
- 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 2. 제9조에 따른 산림치유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 3. 제10조에 따른 산립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활용
-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
- 6. 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 7.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치유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
- 8.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 9.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사 보수교육
-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5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법인·단체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 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 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람
- 제42조(과태료) ① 제3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산림치유프로그램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
-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산림치유사
- ③ 제24조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24조제2호·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치유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호마목부터 아목(아목은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및 같은 조 제3호(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9조제2 항제7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 직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제5조(치유의 숲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작성·변경작성 중이거나 작성·변경작성된 치유의 숲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은 이 법에 따라 작성·변경작성 중이거나 작성·변경작성된 치유의 숲조성계획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 조에 따라 치유의 숲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승인·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 조에 따라 치유의 숲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의 승인이 취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것

으로 본다.

- 제6조(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실시 중이거나 실시한 치유의 숲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이 법에 따라 실시 중이거나 실시한 타당성 평가로 본다.
- 제7조(산림치유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산림치유사의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본다.
- 제8조(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 조의4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제2호 중 "산림욕장, 치유의 숲"을 "산림욕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른 치유의 숲에 필요한 시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7조의2(치유의 숲에 관한 특례)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연도의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 ②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및"으로 한다.
- ③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6항 중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을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치유지도사 등"을 "산림레포츠지도사 등"으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산림욕장·치유의 숲"을 "산림욕장"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수수료)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5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레포 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치유"를 "산림치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6호에 따른 산림치유사

제2조제9호가목 중 "산림욕장, 치유의 숲"을 "산림욕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치유시설

제5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기본계획

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을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제37조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1.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 조제2항·제3항에 따른 치유의 숲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 ⑤ 법률 제19893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 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7조제4항제2호 중 "산림욕장, 치유의 숲"을 "산림욕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른 치유의 숲에 필요한 시설
-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2조의2(치유의 숲에 관한 특례) ①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 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 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②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 조제2항·제5항, 제23조제2항 본문·단서 및 제25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⑦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산림욕장, 치유의 숲"을 "산림욕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른 치유의 숲에 필요한 시설